



산업정책 www.kcca.or.kr



- '하도급계약추정제' 2010년 7월 시행
-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 자금 145억원 지원
- 일자리창출 中企 금리인하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 로 고민 끝
- 中企 녹색기술개발에 327억 지원
- 中企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달초 시행될 듯

하도급계약추정제 2010년 7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5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시행을 위한 통지와 회신의 방법·주소 등과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 상습범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와 관련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지와 회신의 방법은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했을 경우로 한정했다.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 ▲하도급대금
- ▲위탁받은 일시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 ▲그밖에 원사업자와 합의한 내용 등이다.

공정위는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해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기술자료는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및 자료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방법 등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및 자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상습

범위반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하고, 명단공표 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 정하며,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을 과거 3년간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중 벌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법에 규정했다. 상습 범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 연도 1월 1일로 규정해 직전 3년간의 범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범위반사업자를 선정했다.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보존 대상서류에 추가했다. 이는 입찰내역서,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라 범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6월에 확정해 7월 26일 시행할 계획이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

두위탁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의 내용)을 확인요청(통지)해 15일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 자금 145억원 지원

□ 새로운 기술은 개발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제품화를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5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 많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은 성공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 신제품을 시장에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0. 3. 1(월)부터 수시로(자금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 ※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10.21, 중기청 홈페이지)

□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 총 개발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담보와 이자없이 출연방식으로 지원하며,
- 목형·금형·사출, 생산공정 설계, 성능·실험 개선, 전문가 활용, 디자인 등의 제품화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함에 따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① 중기청에서 시행한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② 개발 기술의 시장성과 경제성에 대해 벤처캐피털, 은행 등의 투자기관이나 기술보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③ 제품화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체계에서 애로가 컸던 제품화 개발단계를 지원함으로써,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필요한 선순환 구조의 기술개발(R&D)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 선순환 R&D체제 : 1단계(기획·평가) → 2단계(R&D) → 3단계(사업화)

-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를 기피하던 투자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이 제품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제품화 코칭 및 투자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일자리창출 중소 금리인하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폭을 확대했다.중진공은 올해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0.5%포인트(5~9인)~1%포인트(10인 이상) 추가 우대한다고 최근 밝혔다.지난해 신규고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기업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해 금리를 연 0.1%포인트(5~9인)~0.2%포인트(10인 이상) 우대 지원한데 이은 두번째 금리우대다. 따라서 올해 10인 이상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은 1년간 최대 1.2%포인트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자금신청은 현행 월별 신청 접수에서 수시로 변경해 우선 대출하는 등 우대 지원책을 마련했다.중진공은 지난달 7일부터 정책자금접수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24일 현재 신규고용 창출한 44개 기업에 127억원을 지원했다.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전자세금계산서 'e세로'로 고민 끝

②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올해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고민거리가 또 하나 늘었다. 그러

나 또 한편으로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납세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업무 숙달과 여러 상황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누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부담 완화 차원에서 1년간은 종이 세금계산서와 선택해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실시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인 'e세로(www.esero.go.kr)'를 활용하면 별도 시스템 개발이나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견별 또는 일괄발행이 가능하고, 발행·수취내역 상세목록,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이 'e세로(www.esero.go.kr)'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먼저 법인사업자는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과 전자서명 등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에 사용된다.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되고, 은행용이나 증권용 등 용도가 다른 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공인인증서의 구체적인 발급방법, 준비서류, 가격, 발급대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공인인증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 메인화면 우측 최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클릭해 아이디, 비밀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소재지 등을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절차가 완료된다. 인터넷 이

용이 어려운 사업자는 폰뱅킹을 이용한 ARS 전화 발행(1544-2030) 방법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ARS 전화발행은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이 원칙이나 최소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전송해야 한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다음달 10일까지는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일 다음달 15일 이내 전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공급시기를 포함한 과세기간 말 다음달 15일 이내에 전송하는 경우는 0.1% 가산세를 부담한다.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건당 100원의 교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방법, 부가가치세 신고시 활용방법,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홈페이지 메뉴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이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문의 :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 ‘알면 보이는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뉴스 홈페이지 (www.smenews.kbiz.or.kr)에 게재돼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중소 녹색기술개발에 327억 지원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녹색기술개발에 총 327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되는 이 사업은 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2010년부터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상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위해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제조공정 상 자원(에너지, 자재 등)의 투입은 최소화 하면서 산출물(제품)의 개선효과는 높이고, 온실가스·폐기물 등 환경부하는 극소화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향상과 친환경 공정기술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327억원의 예산으로 연구기관 중심의 산·연협력 지정응모과제로 과급성이 큰 선도와제와 자유응모과제인 기업 맞춤형 실용과제로 구분, 이원체제로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공정자동화 및 생산기술혁신은 물론 친환경·자원순환형 기술분야, 국제환경 협약·규제 대응 분야 등 녹색화 공정기술 분야로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선도와제의 경우 최대 5~6억원까지(2년 이내), 실용과제의 경우 최대 2억5천만원까지(1년 이내) 지원해 전년도 보다 각각 1억원씩 늘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실시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녹색화 공정기술과 과제발굴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우수기술을 종합해 선도와제로 자유응모 가능한 기술은 실용과제로 공고한다. 선도와제는 지정공모 기술에 대해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이 개발,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과제로서 주관기관은 공공

연구기관에 한하고,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기술 분야로는 에너지·자원효율성 향상기술, 친환경·자원순환형 기술, 미래융합형 생산기술, 국제환경협약 및 규제대응 기술 등이 포함된다. 실용과제의 경우 기업현장의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로 기업 단독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선도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산)-연구기관(연) 협력체제로 개편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체계적인 연구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국제 녹색규제에 대응하는 첨단 녹색기술을 중소기업에 선도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취지이다. 올해 제조현장 녹색화 기술개발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공고되며, 선도과제의 경우 상반기에만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각 지방중기청이 실시하는 서면평가·대면평가·현장평가를 거쳐 올해 5월중 신규 지원과제를 확정하고, 6월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중소고용증대 세액공제 이달초 시행될 듯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가 빠르면 이달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

체회의를 열고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고, 26일엔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되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기 실업자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가운데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빠르면 이달 초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 2010/03/02

제 1773호 2010년03월0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